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에 신설 법률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이들 제도의 원활한 산업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제37호를 제39호로 하고, 제37호 및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9호(종전의 제37호) 중 “제36호”를 “제38호”로 한다.

3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529